

#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343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12월 21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‘자료제출’이 조 제목으로 특정되면 「지방자치법」상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된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법령의 근거 없이 직접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현행 ‘의견청취 등’으로 조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조 제목 “자료제출 등”을 “의견청취 등”(안 제9조)으로 수정함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의 제목 “(자료제출 등)”을 “(의견청취 등)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의견청취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자료제출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,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9조(의견청취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,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20조의2 제목  
“(예산정책연구위원회)”를 “(예산정책위원회)”로 하고, 제1항 및 제2항  
중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<u>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회의원의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<u>예산정책연구위원회</u>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의회 <u>예산정책연구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----- <u>예산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,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